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127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정승현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이수영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20. 11. 20.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20. 접수

제25613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21. 8. 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7246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30.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마스크 파우치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머6431 사건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21. 12. 8.자 'D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22. 2. 15.부터

2022. 11. 15.까지 매월 15일에 2,300만 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D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12. 28. 확정되었다.

나. D는 2020. 11. 20. 피고 B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1. 20. 접수 제256135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는 2021. 8. 9. 피고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7216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머64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교환가치가 남아 있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제3호증의 1, 2, 3, 을가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718,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1,574,500,000원인 사실, 2020. 12. 3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350,193,237원(=토지 683,420,820원 + 건물 666,772,41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순번	등기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2018. 4. 27.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699,600,000원
2	2018. 4. 27.			552,000,000원
3	2018. 10. 19.			43,200,000원
4	2018. 11. 5.			423,600,000원
합계				1,718,4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교환가치가 남아 있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진, 판사 정선희, 판사 박혜성

별지